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35

제출일자 : 2012. 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각 조례마다 흩어져 있어 운영이 불편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상위법에 근거 명확화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 대상 및 작성, 예고방법, 기간 등 명시(안 제3조~제8조)
나. 입법과정에서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규정(안 제9조~제12조)
다.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안 제13조)
라. 공포 및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정의(안 제 14조~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8. 30 ~ 2012. 9. 19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이나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주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입 법 예 고

제3조(입법예고 대상)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예고문의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법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문은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공고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방송 또는 군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해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만 발표하여야 한다.

⑤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비 용 추 계

제9조(작성대상)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10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 상정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제13조(연서 주민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이 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군의 19세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제5장 공포 및 시행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 절차) ①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의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5조(예산 등)「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공포방법 등) ①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7조(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8조(시행일)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시행 유예기간)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별지]

○○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가.

나.

2. 비용 발생 요인

3. 관련조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국 △△과장 △△ 담당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행정절차법 제41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